

백영화 연구위원

### 요 약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이 있음. 그 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개정안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하여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 제21대 국회에서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6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음<sup>1)</sup>
  - 과거에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다른 사기죄와 구분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였으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며, 그 외에도 보험사기 관련 수사기관 통보,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하여, 제21대 국회(2020. 5. 30~)에서 현재까지 총 16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sup>2)</sup>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금지,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등이 있으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음

#### ○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됨<sup>3)</sup>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서는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의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음

1) 2016. 3. 29. 제정 및 2016. 9. 30. 시행

2) 2023. 4. 12. 기준임. 참고로 제20대 국회(2016. 5. 30~2020. 5. 29)에서는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3) 총 8개의 개정안에서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주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소병철 의원안)

- 처벌 강화의 내용은 개정안별로 조금씩 상이하어,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법정형 자체를 상향하는 경우 등이 있음

〈표 1〉 개정안별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

현행	이주환, 홍성국, 윤관석, 소병철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	해당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여하는 자가 그 전문 지식과 보험금 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경우 일반적인 사기행위에 비해 적발이 어렵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의 예방과 억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이미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추가적으로 직업·신분에 따른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형법 체계의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sup>4)</sup>

○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됨<sup>5)</sup>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청구한 보험사기행위 관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임<sup>6)</sup>
  - 개정안 중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점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회수를 위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러한 장기간의 소송 절차 중 범죄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보험금 환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를 통한 불법적인 재산상 이득 수취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다수의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임<sup>7)</sup>

4) 이주환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0. 9) 등  
 5) 총 8개의 개정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주환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강민국 의원안)  
 6) 한편 개정안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에 대한 내용은 없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반환 의무에 대한 조항만 두는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행위 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임
  - 개정안 중에는 자료제공 요청의 주체를 금융위원회로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개정안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금융당국이 자료제공 요청을 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보험사기행위나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 행위의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의심 사례의 조사 및 고발·수사외리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자료제공 요청권의 행사 주체를 누구로 규정할 것인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또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나 과태료 부과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음<sup>8)</sup>

####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됨<sup>9)</sup>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또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을 금지하는 내용임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등이 있음
  -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은 개정안마다 차이가 있음
- 최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 관련 개정안들이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에 대해 각각 처벌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보호해야 할 법익,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벌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sup>10)</sup>

7) 총 7개의 개정안이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에 대해 다루고 있음(이주환 의원안, 홍성국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소병철 의원안)

8) 이주환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0. 9); 홍성국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 2); 윤관석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2. 5) 등

9) 총 6개의 개정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김한정 의원안과 박수영 의원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의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을 금지하고 있음

10) 김한정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 2); 홍석준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2. 11) 등

〈표 2〉 개정안별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에 대한 처벌 수준

현행	김한정 의원안	윤관석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홍석준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알선 등에 대한 처벌 조항 없음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행위 알선·광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중에는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우들도 있음<sup>11)</sup>

-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경우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원적정성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내용으로 함
  - 심평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입원적정성 심사기관에 심평원 외에도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의학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 사전에 객관적인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이 마련된다면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및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입원적정성 평가는 환자의 연령·병력·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심사 기준을 일률적으로 마련하여 규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sup>12)</sup>

○ 그 밖에도 보험사기 관련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

-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보험사기죄에 대한 벌금형 상향, 보험사기 목적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 심평원의 수사기관 통보 의무, 보험사기죄로 처벌 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의 명단 공표 제도 도입,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개정안들이 발의됨

○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함

11) 총 4개의 개정안이 입원적정성 심사 제도 개선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김한정 의원안 및 윤관석 의원안, 입원적정성 심사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윤관석 의원안 및 소병철 의원안,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윤주경 의원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2) 김한정 의원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 2) 등

〈표 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번호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1	2101190	이주환 의원	2020.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해지</li> </ul>
2	2102553	윤창현 의원	2020.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li> </ul>
3	2106276	홍성국 의원	2020.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제재조치 근거 마련</li> <li>•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보험사기 조사 절차·기준 마련</li> <li>• 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li> </ul>
4	2106861	김한정 의원	2020.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금융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제재조치 근거 마련</li> <li>•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보험사기 조사 절차·기준 마련</li> <li>• 자동차보험료 할증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li> <li>• 보험회사의 수사기관 통보 사실 누설 금지</li> <li>•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li> <li>•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li> <li>•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해지</li> </ul>
5	2114398	윤관석 의원	2022.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해지</li> <li>•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 금지</li> <li>• 입원적정성 심사기관 확대 및 심사 기준 마련</li> <li>•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li> <li>•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li> <li>• 보험사기방지기금의 설치·운용</li> </ul>
6	2115568	김병욱 의원	2022. 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해지</li> <li>•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 금지</li> <li>• 심평원의 수사기관 통보 의무</li> <li>• 보험회사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시 당사자 통지 의무 유예</li> </ul>
7	2115967	이정문 의원	2022. 6.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시 금융위원회 보고 및 자료보존 의무</li> <li>• 수사의뢰 관련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통보 의무 등</li> </ul>
8	2116023	이종배 의원	2022. 6.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상향</li> </ul>
9	2116832	홍석준 의원	2022.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시 보험계약 해지</li> <li>•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및 보고, 통보 등</li> <li>• 보험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신설</li> </ul>

10	2117422	박재호 의원	2022.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명단 공표</li> <li>•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li> <li>•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유인 금지</li> <li>•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신설</li> <li>•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li> </ul>
11	2117766	소병철 의원	2022.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li> <li>•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li> <li>•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상향</li> <li>• 입원적정성 심사기관 확대</li> <li>•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 신설</li> <li>•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li> </ul>
12	2118443	강민국 의원	2022.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이득액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및 보험계약 해지</li> </ul>
13	2120025	김희곤 의원	2023. 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상향</li> </ul>
14	2120419	윤주경 의원	2023.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li> </ul>
15	2121245	박수영 의원	2023.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의 명단 공표</li> </ul>
16	2121280	박수영 의원	2023.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li> </ul>